

서울특별시성북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 자동판매기설치허가또는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성북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허가또는위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성북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
판매기설치허가또는위탁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또는 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장애인복지법」 제38조, 「노인복지법」 제25조, 「모자복지법」
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하여”를 「장애인복지
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독립유
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에 따라” 로 “및 65세 이상 노인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 모자가정의 여성,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을 「국민기초생
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국
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 한다.

제2조1항 중 “타법령이”를 “다른 법령에서”로,“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0㎡이하인 시설에 한한다”를 삭제한다.

제3조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에서 정한”으로 , “방법에 의하여”

를 “방법으로”로 한다.

제4조2항 중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수급자증명서, 모자가정증명서, 국가유공자수첩 등”은 “장애인 등”으로 한다.

제5조1항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제2항중 “규정에 의하여”를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6조1항 중 “규정에 의하여”를 “규정에 따라”로, 제2항 중 “규정에 의하여”를 “규정에 따라”로, “배우자 그리고 형제·자매”를 “배우자”로 한다.

제7조 및 제8조는 각각 제8조, 제9조로 이동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계약의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계약을 한 자가 사망한 경우
3.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
4. 그 밖의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자는 3년간 재신청 할 수 없다. 단,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별표는 별표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은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5조 관련

판매대 등 설치허가 또는 위탁계약 신청자가 2인 이상일 때의 우선 순위 결정

순위	장애인	65세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국가 유공자의 그 유족 또는 가족
1	--	---	-----	-----
2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지원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제외한 자	-----
3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서울특별시성북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 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허가또는위탁에관한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38조, 「노인복지법」 제25조, 「모자복지법」 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하여 성북구(이하“구”라 한다) 또는 그 소속기관과 구지방공기업에서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이하 “판매대등”이라 한다)를 설치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 및 65세 이상 노인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모자가정의 여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또는 위탁에 관한 조례</p> <p>제1조(목적) -----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 자동판매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p>

제2조(적용의 범위) ① 제2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판매대 등을 설치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타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0m² 이하인 시설에 한한다.

② (생략)

제3조(사전공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그 소속기관과 구지방공기업의 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에 판매대 등의 설치허가 또는 위탁 대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구보 및 성북구홈페이지 게재 또는 게시판의 공고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공고 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판매대 등의 설치허가 또는 위탁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생략)
2.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수급자증명서, 모자가정증명서, 국가유공자수첩 등

제2조(적용의 범위) ① -----
----- 신문·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 판매기(이하 “판매대등”이라 한다)-- 다른 법령-----

-- 따른다. <단서 삭제>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사전공고) -----

----- 제2조에서 정-----

----- 방법으로-----

제4조(신청) -----

-----.

1. (현행과 같음)
2.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는 판매대 등을 직접 운영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
을 체결한 자중 중증장애 또는
연로한 자로서 계약자가 직접
운영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
리인에게 운영하도록 할 수 있
으며, 계약체결시 대리인을 명
기하여야 한다. 단, 대리인의 범
위는 계약자의 배우자, 직계 존
· 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그
리고 형제·자매로 한다.

<신 설>

-----.

② ----- 따라-----

----- 배우자-----
-----.

제7조(계약의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
다.

1.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계약을 한 자가 사망한 경우
3.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
4. 그 밖의 관련법령 및 계약조
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자는 3년간 재신청 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8조 (현행 제7조와 같음)

제9조 (현행 제8조와 같음)